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2가단208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7. 20.

판 결 선 고 2022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5,000,000원 및 그 중 37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4. 11.부터, 38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3. 30.부터 각 2022. 6. 8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전경호

별지